

##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

사 건 2000고단 000호 상해 피 고 인 0 0 0

위 사람에 대한 귀원 20○○고단 ○○○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의 증 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합니다.

## 신 청 취 지

20 ○ ○ . ○ . 14:00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의 검사 제출 증거서류 조사를 취소하는 재판을 구합니다.

## 신 청 이 유

20〇〇. ○. ○. 14:00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조사함에 있어 증거물이 서류일 때는 피고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그 요지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요지를 고지하지 아니하고, 증거서류에 대한 열람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위법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제296조, 동법 304조에 의거 이의신청합니다.

 20○○년
 ○월
 ○일

 위 피고인
 ○
 ○
 ○
 (인)

○ ○ 지 방 법 원 ○○지원 형사○단독 귀중

				V 대한법률구조공단
제출기관	사건계속 법원	관 런 법 규	형사소송법 296조	www.klac
신 청 인	·검사 ·피고인 또는 변호인	제출부수	신청서 1부	
불복절차 및 기간	(항고불허 : 형사소송법 403조)			